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20일, 권영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권영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¹⁾(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화단지 관련 규정의 경우 '17.3월 현행법 개정으로 제명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관련 용어들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유비쿼터스시범도시²⁾”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변경되어 남아 있으나,

기존의 특화단지(유비쿼터스시범도시) 규정과 별도로 '18.8월 국가시범도시³⁾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세종, 부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現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비쿼터스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비쿼터스시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산을 국가시범도시로 운영함에 따라, 특화단지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특화단지 지정 사례도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주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특례⁴⁾를 부여하는 등 특화단지 지정절차 및 규제특례 적용 범위를 국가시범도시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특화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및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스마트도시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23.2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⁵⁾”에서도 특화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발표한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5)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이양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중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관련】

과제명	주요 내용	부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현행)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 (개선) 시·도에서도 지정	국토 교통부

※자료: 국무조정실

한편, 개정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은 특화단지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⁶⁾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적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⁷⁾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화단지

6)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현황

○ (구성) 위원장(국토부장관, 민간위원장* 2명), 부위원장(3명)을 포함하여 정부·민간위원 등 30명 이내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 (정부위원, 당연직 10명) 공동위원장(국토부장관), 부위원장(국토부 차관, 과기부 차관, 행안부 차관) 및 일반위원(6개* 중앙행정기관 차관) * 복지부,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차관 - (민간위원, 4기 15명)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임기 2년, 연임 가능)
--

※자료: 국토교통부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대상을 “특화단지에 적용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신공항 종전부지⁸⁾ 등 산업·기술 거점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시·도지사가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에 준하는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특화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조항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준용규정의 자구를 명확히 정비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 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조항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준용규정의 자구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3항 중 “제37조”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로, “제45조의 규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한다”를 “제45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지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스마트도시특화단지</u> 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 ----- -----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스마트도시 특화단지</u> ----- -----.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특화단에 필요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	

<u>행정 · 재정 ·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화단지에 필요한 행정 · 재정 ·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스마트 도시 특화단에 준용한다. <후단 신설></u>	③ <u>스마트도시 특화단에 관하여는 제37조-----</u> ----- ----- ----- -----제45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 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본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

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u>국가시범도시</u> 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u>국가시범도시 및 스</u> <u>마트도시 특화단지</u> ----- ----- ----- ----- ----- ----- -----.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u>국가시범도시</u> 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u> <u>시 특화단지</u> ----- -----

1. ~ 5. (생략)

6. 국가지법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
시 특화단지-----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
하여는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

2조의3,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